

점단대곡동지석묘군 (기념물 제33호)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-1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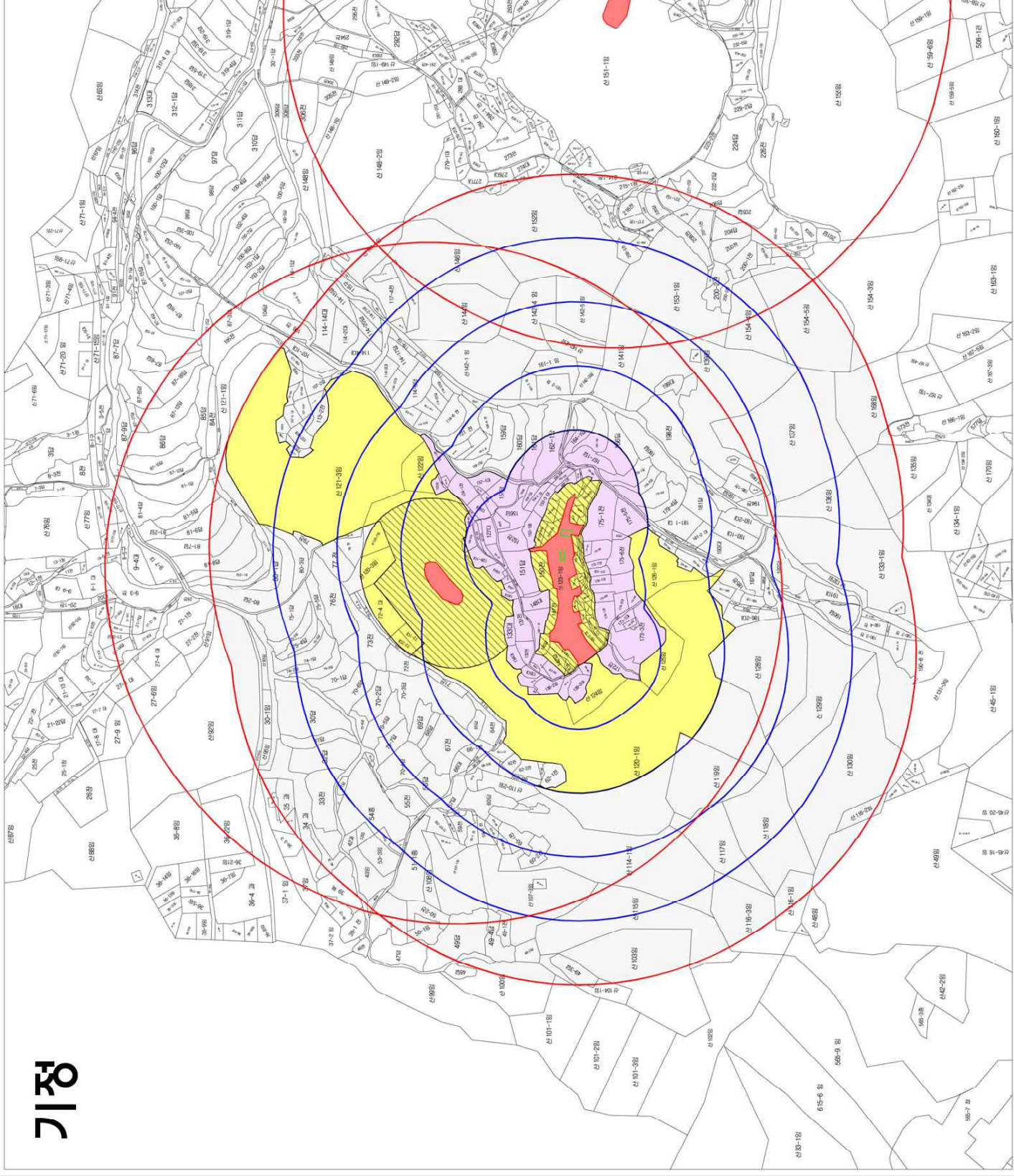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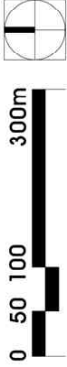
범례

- 문화재구역
- 문화재 지정구역
-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
(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)
- 문화재구역 반경 100m

현상변경 허용기준

구분	장지종	경사지종 (3:10 이상)
1구역	○ 원거성 보전 ○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○ 문화재 보호 - 건물을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	○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·시설변경 허가(신의)를 발도발 함.
2구역	-	○ 최고높이 14m 이하
그외지역	○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경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착상 조성 ○ 장·과거를 처리시설 등 이용 유산인 시설은 개발 원의 ○ 건축물 최고 높이는 독립, 계단, 승강기, 방수, 양식탑 ○ 11년 이상 유산의 조성을 조화하여 용어지는 건물공사 ○ 본 개척 성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산인 시설물의 신축 및 확장공 개발 성되	

SCALE : 1/6,000(A3)



경단대곡동지석묘군 (기념물 제33호)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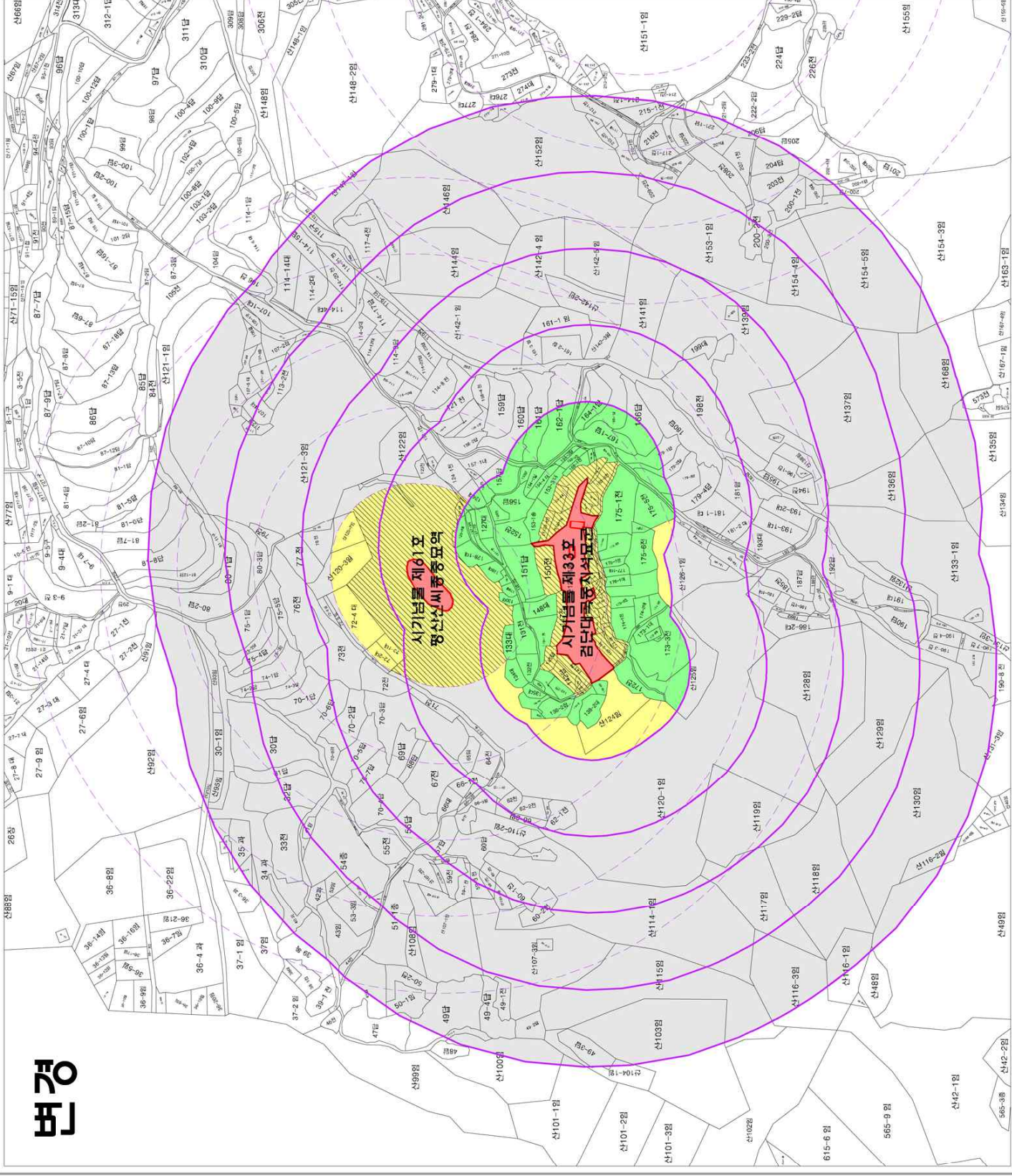
현상변경허용기준(안) -주민공람-

범 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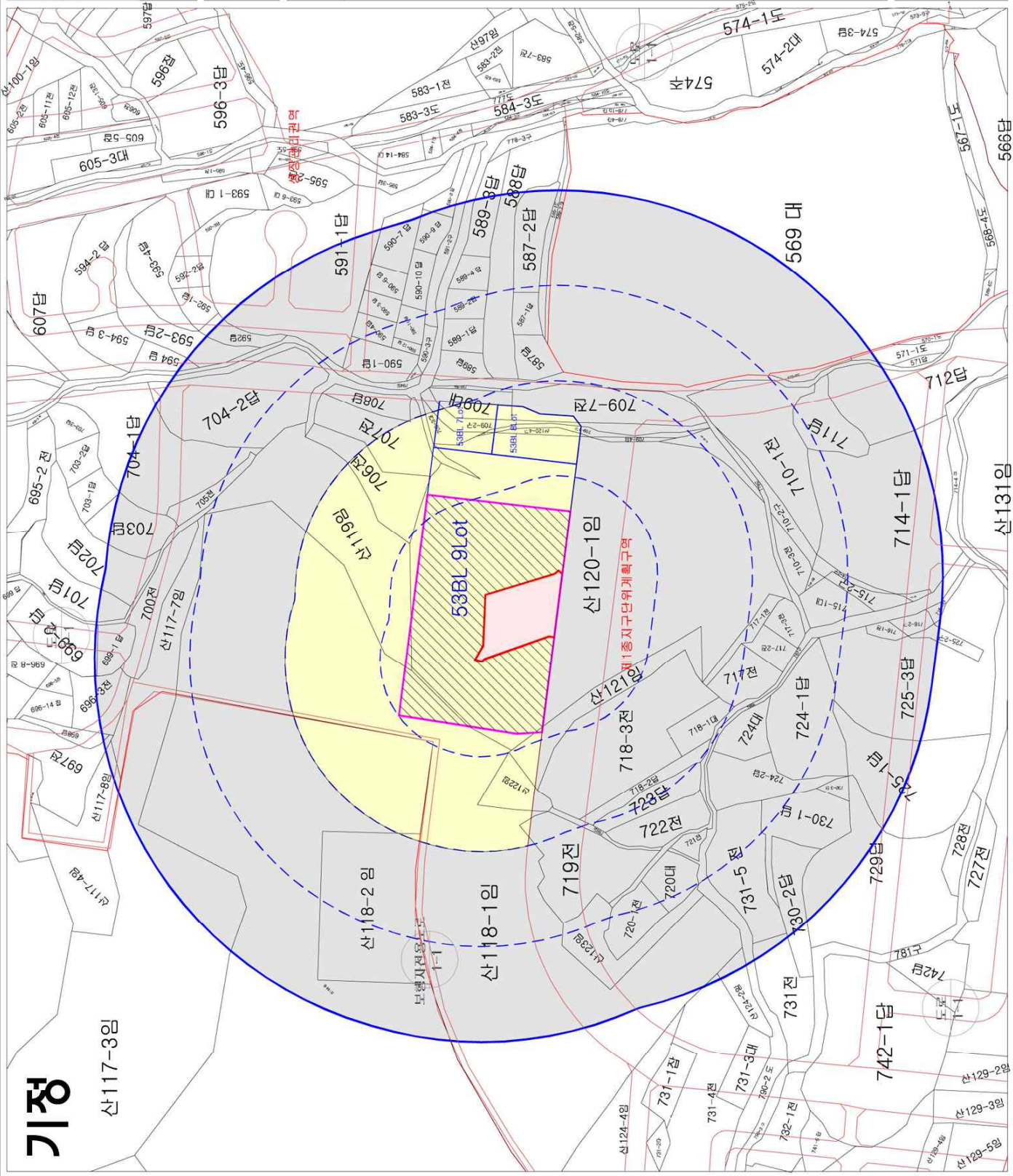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정지불	정시지불 (3:10 이상)
1구역	· 원시정비불 ·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·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	
1구역	·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용에 건축공사의 사항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 허가여부를 함	
2구역	· 최고높이 14m이하 · 최고높이 16m이하	
그외지역	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 에 따라 처리 (그시행에 기준)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 내에서 건축법(도시계획)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괄적 법령을 정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됨 함.	
경동시장	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용 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· 문화재와 조화되는 석상 건립 · 원형을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묘 및 소각기처리시설, 도축 장, 화기를 처리시설 등 이외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신청의 ·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실, 승강기실, 방수,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축 및 확장은 개 별 협의	

SCALE : 1/5,000(A3)



기정

산117-3임



기념물 제57호

김안정 묘 및 출토묘비

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3BL 9L

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

범례

문화재구역

양향림토구역

(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69호)

문화재지정구역반경200m

1구역

1구역

그외구역

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정지중 경사지중(3:10이상)

김안정묘및출토묘비 (기념물 제57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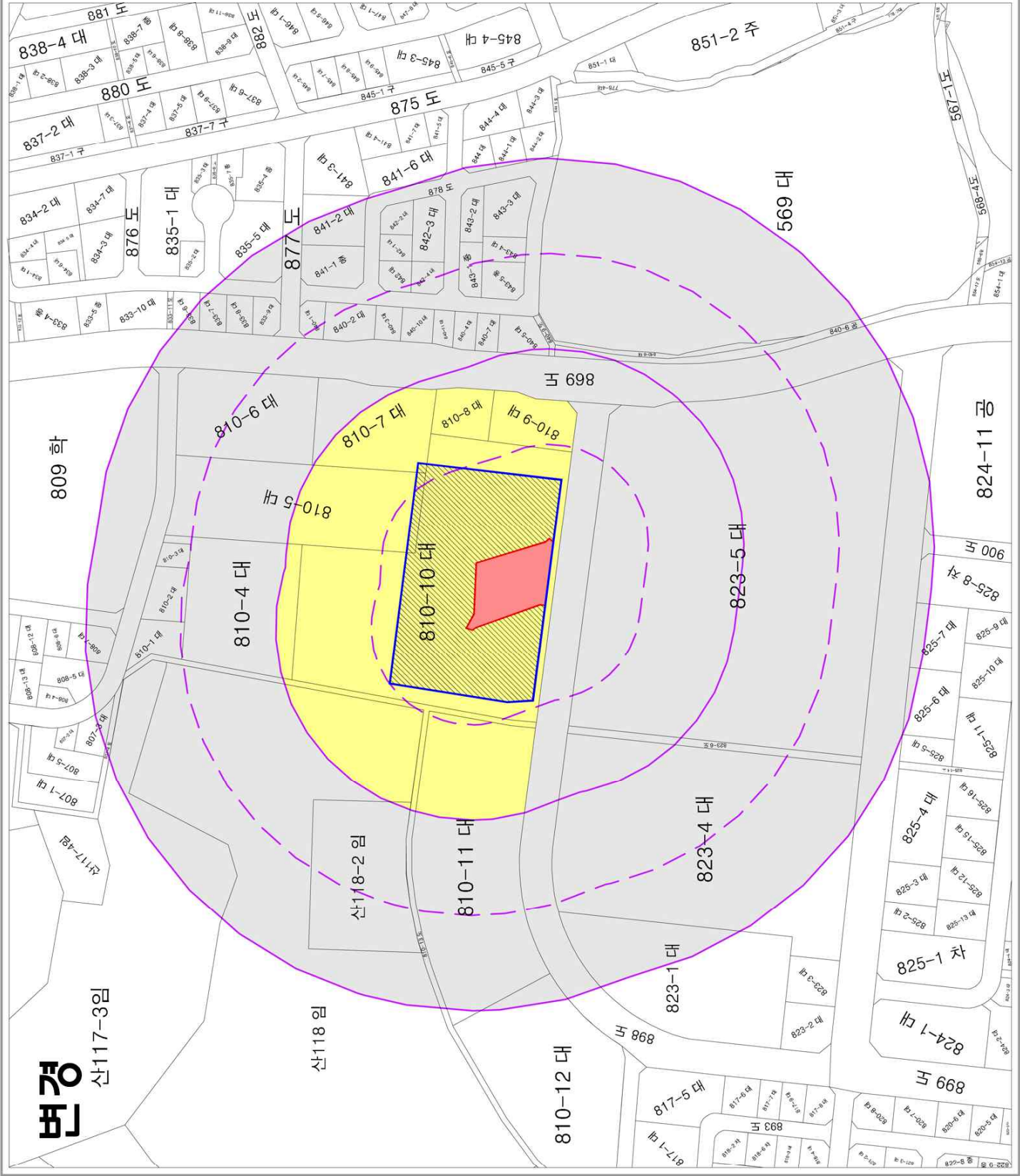
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-10

현상변경허용기준(안) -주민공람-

범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(50m 간격)
- 영양권토구역(인도광역시 고시 제2009-269호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정지불	정시지불 (3:10 이상)
1구역	· 원지정본 - 문화재 보호 권리를 위한 시설에 인접 허용 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	
1구역	·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축물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허가여부를 함	
그외지역	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 에 따라 처리(고시령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 내에서 관련법령도 시행되는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괄이 반영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
광복시장	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 기존 법 령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· 문화재의 조망되는 특성 강조 · 환경을 조성 및 조망시켜 법규 및 수경기차지시와 도록 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인접 유입인 시설은 개별 심의 · 광복시장 상, 철도 아거나 창고를 상토하여 높이(2m)이상 의 법면, 벽면, 창고의 높이는 상토는 개별심의(2m)이상 의 법면은 최고, 지면선의 높이(한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·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방수,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. 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축 및 확장은 개 별 심의 ·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10개용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	



기념물 제58호

허암 정희량 유해지

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61-5

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

범례

문화재구역

영향권토구역
(인천광역시 도시 계획2009-269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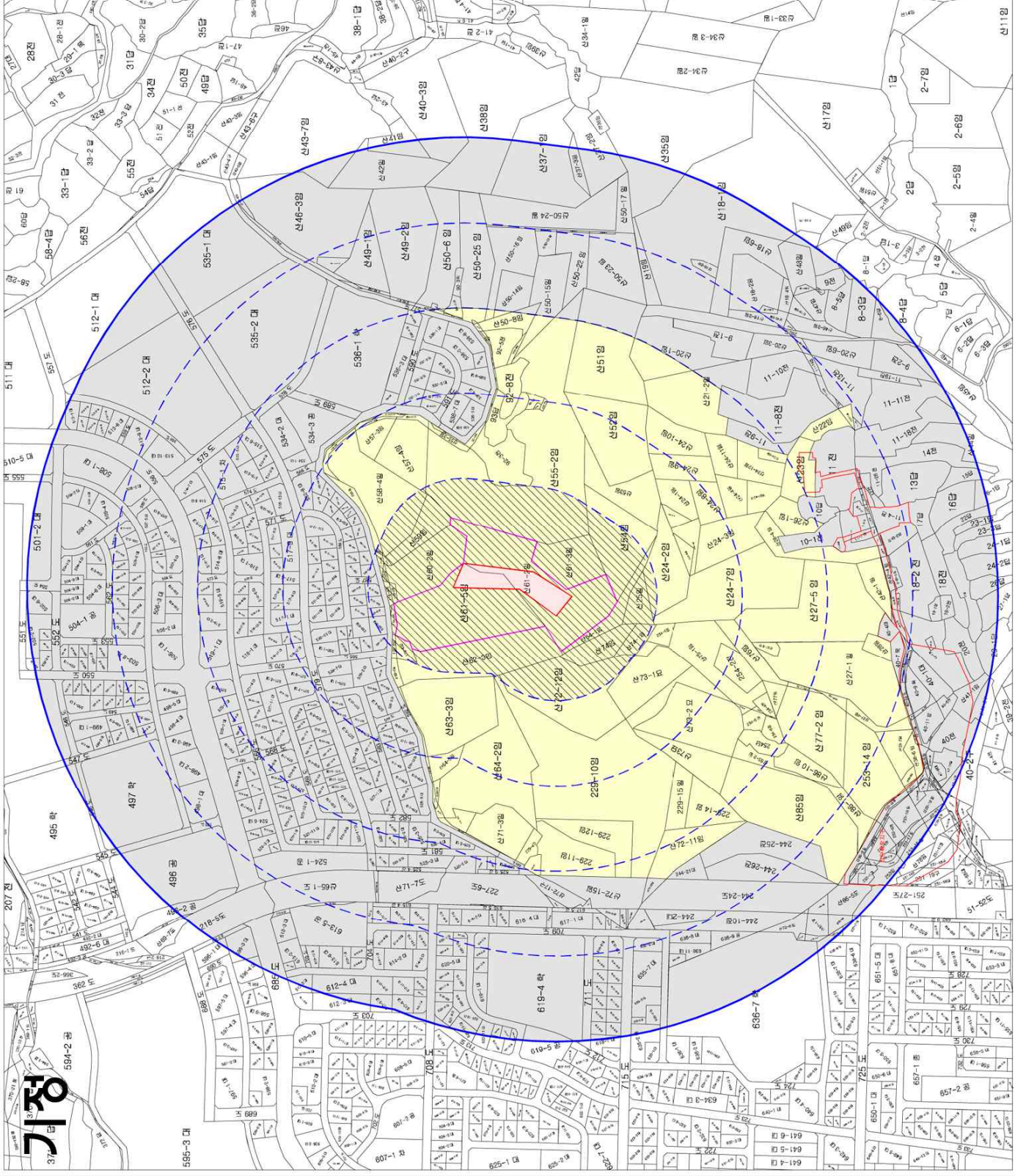
문화재지정구역반경500m

1구역

1구역

그외구역

구분	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
1구역	영향권토구역의 구역여부 -기존토지주체의 구역여부 -문화재 토지 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
1구역	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
그외 구역	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
공통 사항	기존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 문화재 구역(사물) 및 문화재 지정 구역(사물)의 구역여부



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(기념물 제59호)

서구 대곡동 산151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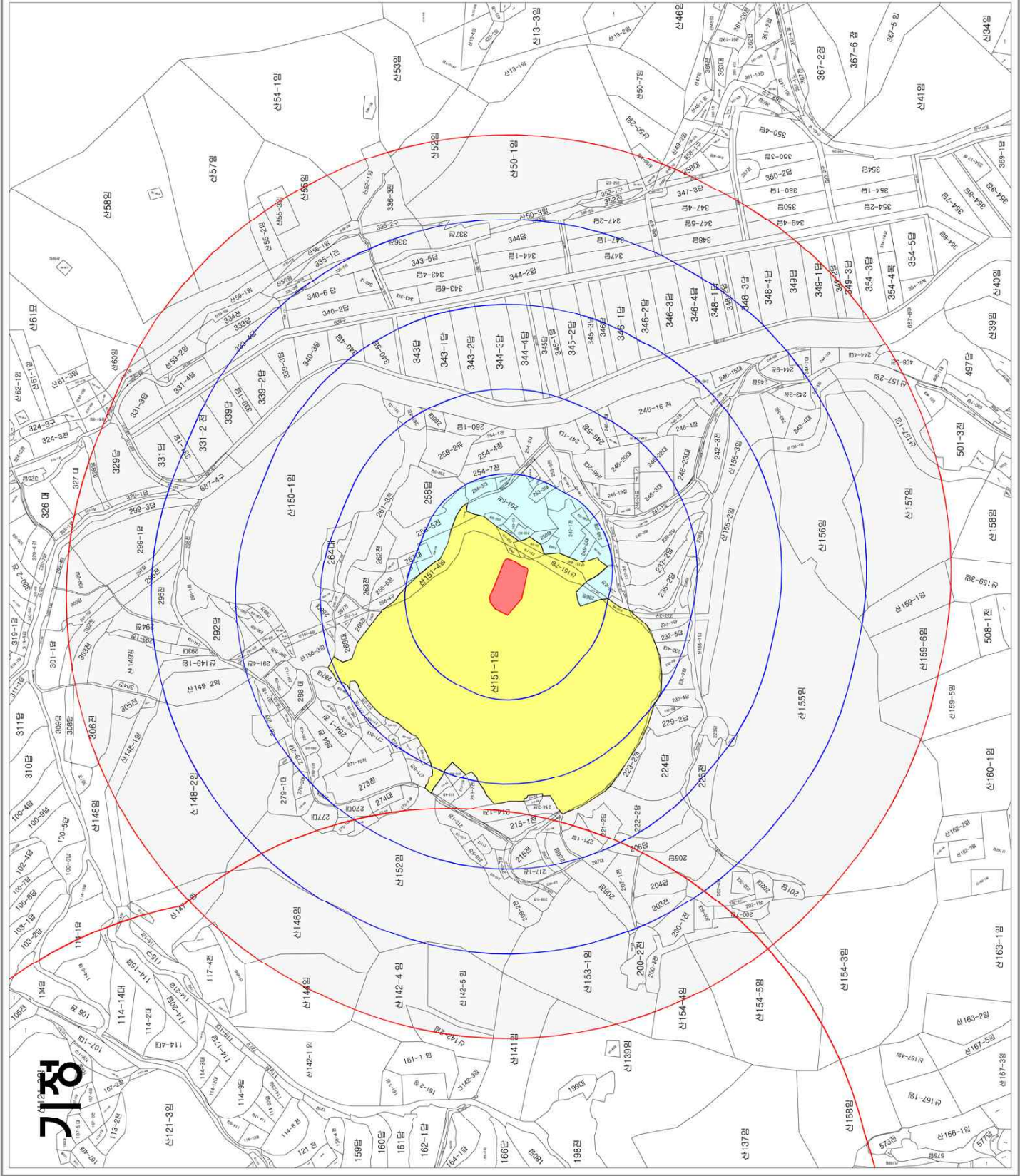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범 레

- 문화재구역
-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
(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)
- 문화재구역 반경 100m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방지용	경시지용 (3:10 이하)
1구역	○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 변경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	
2구역	-	○ 최고높이 12m 이하
그외지역	○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경관시양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복합 건물 ○ 위층을 저장 및 전시시설, 문화노조, 스키기 저라사실, 도록 창, 폐기물 저라사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건물 심의,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상, 계단실, 승강기실, 일부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용이하지는 건축공사 ○ 건물 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축 및 복장은 개별 협의	

SCALE : 1/4,500(A3)



반남박씨대중종묘역 (기념물 제59호)

서구 대곡동 산151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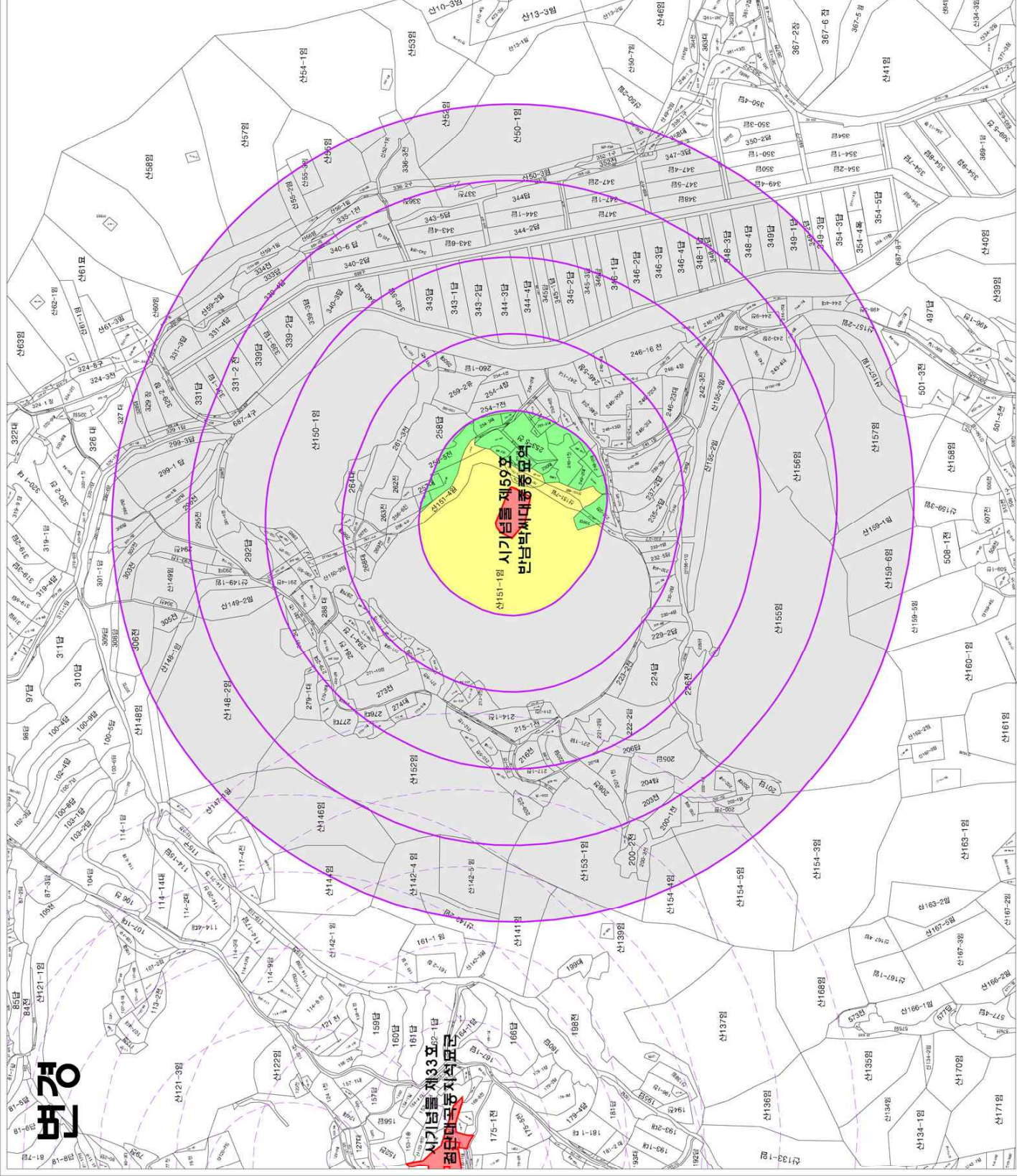
현상변경허용기준(안) -주민공람-

범 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역시문화환경 보훈지역

구 분	현상변경 허용기준
1구역	경사지붕 (3:10 이상) ·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물주인의 사행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검토 하여 허가하도록 함
2구역	· 최고높이 11m이하 · 최고높이 13m이하
그외지역	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 에 따라 지리(고시)현황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
경종시향	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음 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· 문화재의 조망되는 석상 건양 · 원형을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묘 및 소궤기처리시설, 도록 장, 화기를 처리시설 등 이외 유사한 시설은 건물 신의 ·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실, 승강기실, 방수,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축 및 확장은 개 별 협의

SCALE : 1/5,000(A3)



평산신씨 종중묘역 (기념물 제61호)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0-1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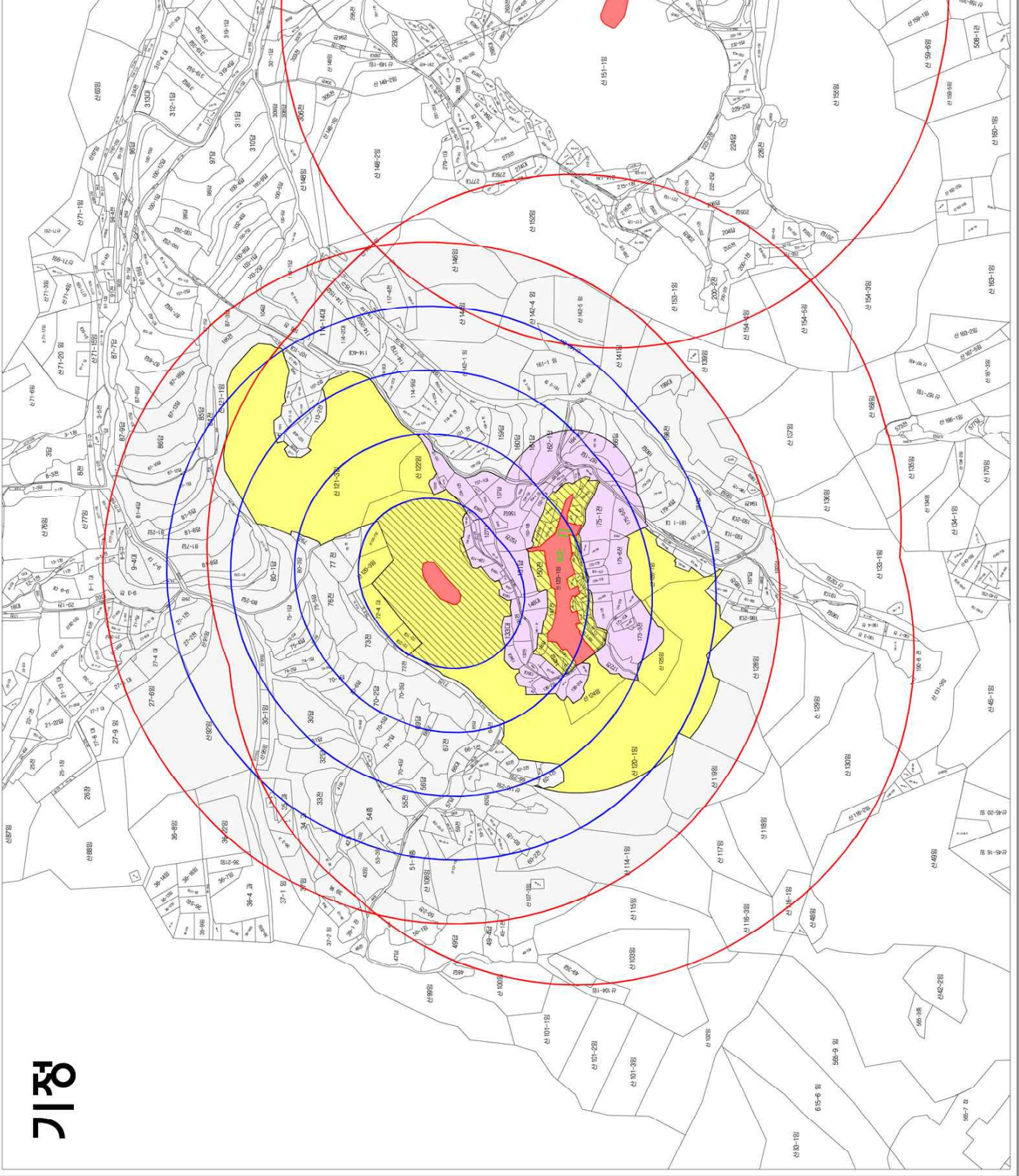
범례

- 문화재구역
- 문화재 지정구역
-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
(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)
- 문화재구역 반경 100m

현상변경 허용기준

구분	장지종	경사지종 (3:10 이상)
1구역	○ 원형성 보존 ○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○ 문화재 보호 - 편의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	○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·시설변경 허가(신의)를 발도발 함.
2구역	-	○ 최고높이 14m 이하
그외지역	○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경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보수신 가함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착상 조성 ○ 장, 좌기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 원의 ○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상, 계단, 승강기, 방수, 양식탑 ○ 구(구)의 유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용이하지는 건물공사 ○ 본 개축 성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축 및 확장도 개발 성회	

SCALE : 1/6,000(A3)



평산신씨종중묘역
(기념물 제61호)

현상변경허용기각(안)

문 화학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구분	영지명	정식비율 (3:10 이상)
1구역	- 원시림보존 - 습지, 담수부호, 산림 등 자연을 위한 시설에 관한 내용 - 기존 건축물도 계획가능	
1구역	- 연상부대(신촌) 및 동쪽이 아가 신장사 영내 건설공사로 인한 시공일체 부호등 영향을 미치지않아의 어복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	
2구역	- 화교놀이 14m이하 - 화교놀이 14m이상	
그외지역	- 국도의 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간척법 등 관련건설법에 따라 처리 (고시현행 기준) 또는 역사문화자원포함되지 않아 현재에 대한 조망 또는 지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경우 문화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상부대 영용기지를 재조정토록 함.	
공용시설	- 기동 보행로 및 시설물에 여유공간이 예상된 경우 기동보행로에 가 개조할 대상을 가능 - 도로안쪽에 조망되는 색상 공간 -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장소 및 유류기타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저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관리의 건물과 고기다 놓이는 축산, 계단, 승강기실, 창고, 장려 등을 고기다의 유사한 것을 포함. - 도로, 교통 용이위 유사한 시설물의 시설 및 확장은 개도물 산	

